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사항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지역			조합원수	
	주택형별			주택규모(㎡)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시기				

「주택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합대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조합원 명부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2.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여야 합니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